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3493

2026. 3. 3.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6. 02. 09. 성흠제 의원 발의(2026. 02. 12. 회부)

2. 제안이유

○ 최근 화재·정전·침수 등 디지털재난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의무와 그 내용을 명문화하여, 서울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단계별 대응·복구 절차,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 등 필수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개정조례안은 화재·정전·침수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1]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 ③ (생 략)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관리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백업 및 복구체계 2.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복구 절차 3. 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대응 체계 4. 그 밖에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1. **"정보통신기반시설"** 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참고로, 현행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이하 "조례"**)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장애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중단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재난을 기존 재난 유형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제정되었음.

○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에게 화재, 정전, 침수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에 대비하여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및 장애대응 매뉴얼」(2025.7.)을 마련하여 자체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음.[2)]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2025.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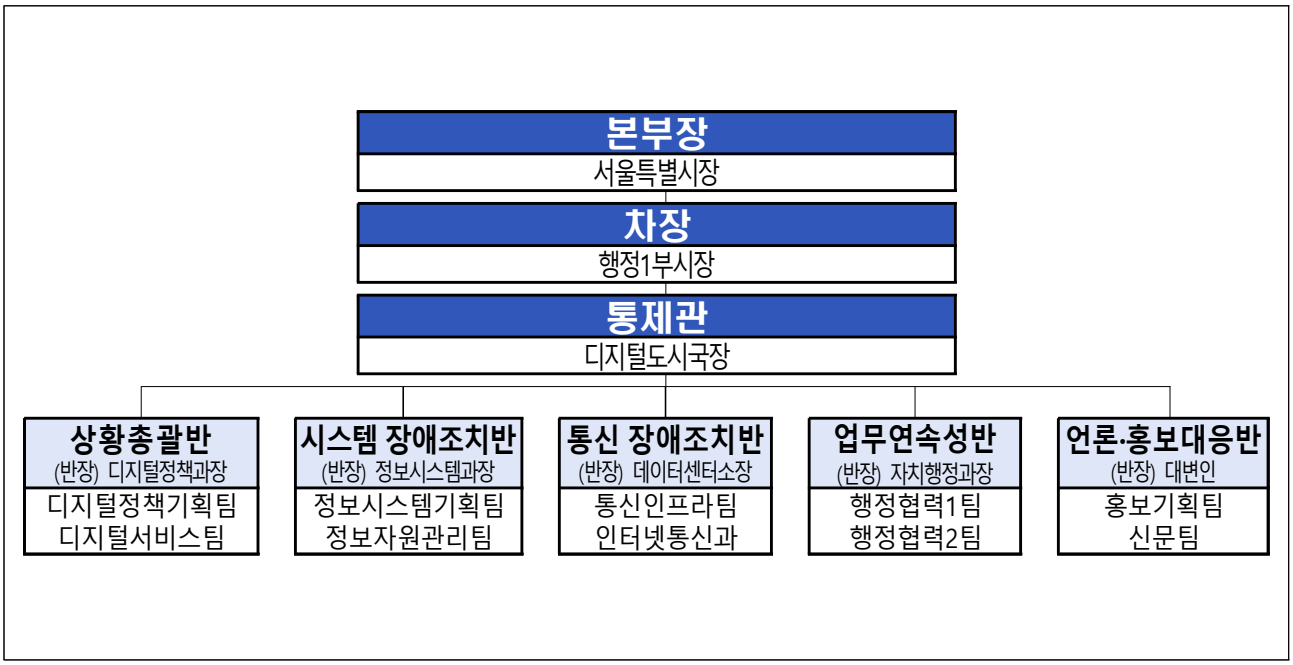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서울시 장애대응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자료 2025. 09. 27.

- 또한, **조례 제5조**[3]에 따라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2026년 3월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안) - 서울시 위기상황 대응본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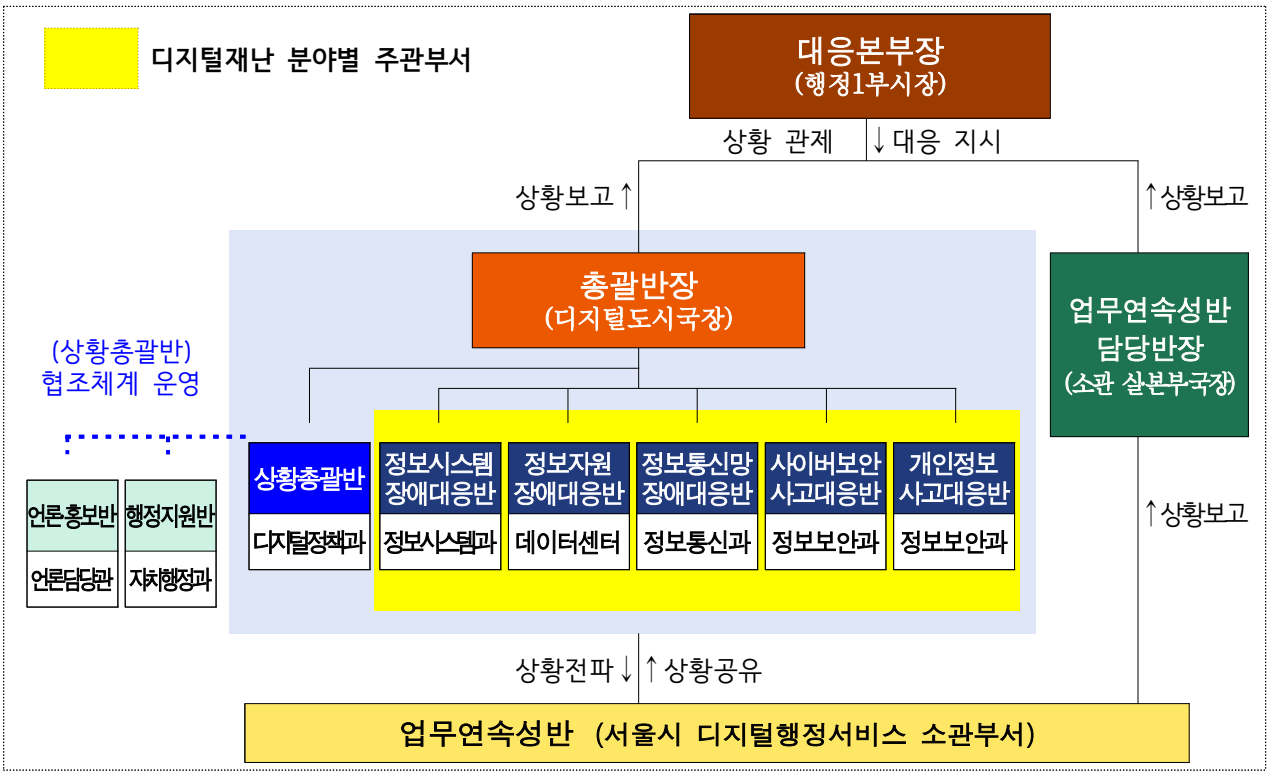

※ 출처: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제공

- 현행 매뉴얼상 관리체계는 디지털도시국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장애 대응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계획(안)상 관리체계는 시스템을 소관하는 사업부서의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반'**을 추가로 구성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강된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3)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제5항**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단계별 대응·복구 절차,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대응 체계 등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서울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센터 2개소[4]를 포함하여 25개 자치구 전역에 분포한 106개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센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음.[5] 아울러, 화재로 중단된 서울시 전산시스템 64개 중 63개를 복구하는 등 자체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음.[6]

○ 따라서 안 제7조제5항이 개정되면, 서울시의 이러한 자체 대응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체계>

□ **비전 :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 도시 서울'**
□ **목표 :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핵심 가치**
- ㅇ 연속성 : 무중단 서비스, 대체수단 가동, 백업·복원
- ㅇ 신뢰 : 정확한 정보 제공, 보안·안전 보장, 대시민 안내
- ㅇ 회복력 : 빠른 정상화, 유연한 대응, 재발 방지
- ㅇ 책임성 : 명확한 역할 분담, 지휘·통제 체계, 기록·보고 의무
- ㅇ 협업 : 공공·민간 연계, 부서 간 공조, 합동 훈련

<디지털재난 분야별 추진부서 및 추진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장애	정보자원 장애	정보통신망 장애	개인정보 사고	사이버보안 사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과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
멈춤 없는 서비스, 끊김 없는 디지털행정	데이터센터 인프라 보강으로 장애 복원력 제고	정보통신망 복구력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보호수준 강화	지능화된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방어력 확보

※ 출처: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제공

4) 서초동 393의1(1994년 준공), 상암동1648 에스플렉스센터(2016년 준공)에 1곳씩 데이터센터 2곳을 운영.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시 전체 정보시스템(429개)의 90%인 384개 시스템이 작동 중 (서울솔루션, 국가데이터처 2026)
5)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관내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화재안전대책'을 수립 및 전수 점검」 자료, (서울소방, 2025.10.)
6)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고자료 2025.10.14. (붙임3 참조)

다.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및 세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증가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디지털재난 관리체계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7] 및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 매뉴얼(2025.7.)」 등 다양한 조례, 기본계획, 매뉴얼등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시민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내 각 부서와 데이터센터, 관계 기관과 자치구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법조사관	김민수	02-2180-8203

〔붙임1〕 관계법령 (p.7)

〔붙임2〕 개정안(제7조제4항·제5항) 디지털재난 관리 관련 조문 비교표 (p.12)

〔붙임3〕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고자료(p.13)

---

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7.>

1. **“재난”** 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2. 1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분야별 대책
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5.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훈련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른 도시안전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춰야 하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관리)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체계 구축과 제2항에 따른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서울특별시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따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붙임2 개정안(제7조제4항·제5항) 디지털재난 관리 관련 조문 비교표

<현행 조례와 일부개정안(제7조제4항·제5항) 비교>

현 행	구 분	개 정 안	비고
제7조제1항 ~ 제3항	디지털재난 관리 및 대비·대응 기본사항	· 현행과 같음	변동 없음
미규정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운영	· 제7조제4항	(신설)
미규정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복구 체계	· 제7조제4항에 포함	(신설)
미규정	단계별 대응·복구 절차	· 제7조제4항에 포함	(신설)
미규정	연속적 운영 확보를 위한 보호·대응 체계	· 제7조제5항 신설	(신설)

붙임3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보고자료

□ 서울시 피해 및 조치 현황

○ (피해현황) : 23개 실국 총 64개(대시민 38, 내부행정 26)

- 1차: 63/64개
- 2차: 100% 복구 완료(2025.10.14.)

○ 서울소재 공공 · 민간 데이터센터(56개소) 긴급 실태조사 실시(9.29.~10.1.)

- 전산실·배터리실 분리 29개소(51.8%), UPS실 소화설비 설치 50개소(89.3%) *서초 상암 데이터센터 포함

○ 서울시 데이터센터·전산실(28개소) UPS 축전지 현황 조사 실시(10.2.)

- 납축 27개소('24 서초 상암 데이터센터 납축 교체), 리튬 1개소(시립대, 차단벽 설치, 교체조치 통보)

○ 서울소재 데이터센터(106개소) 화재안전관리 현장조사추진(10.10.~16.)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25.9.27. 18:00)

○ **구 성 : 지휘부 및 5개 실무반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지휘부 : 본부장(서울특별시장), 차장(행정1부시장), 통제관(디지털도시국장)**
- 실무반 : 상황총괄반, 시스템장애조치반, 통신장애조치반, **업무연속성반**, 언론·홍보대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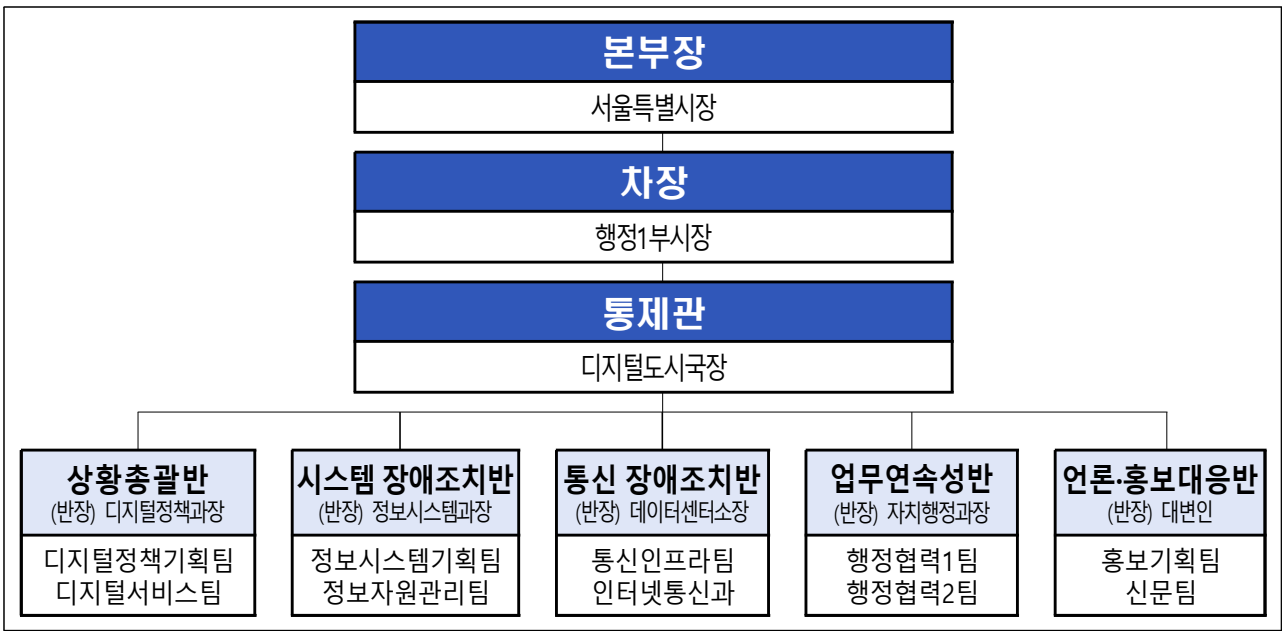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의 분야별 추진체계>

□ **비전 : '재난·위기에 강한 디지털 안전 도시 서울'**

□ **목표 :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

□ **핵심 가치**

- ㅇ 연속성 : 무중단 서비스, 대체수단 가동, 백업·복원
- ㅇ 신뢰 : 정확한 정보 제공, 보안·안전 보장, 대시민 안내
- ㅇ 회복력 : 빠른 정상화, 유연한 대응, 재발 방지
- ㅇ 책임성 : 명확한 역할 분담, 지휘·통제 체계, 기록·보고 의무
- ㅇ 협업 : 공공·민간 연계, 부서 간 공조, 합동 훈련

<디지털재난 분야별 추진부서 및 추진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장애	정보자원 장애	정보통신망 장애	개인정보 사고	사이버보안 사고
정보시스템과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과	정보보안과	정보보안과
멈춤 없는 서비스, 끊김 없는 디지털행정	데이터센터 인프라 보강으로 장애 복원력 제고	정보통신망 복구력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한 보호수준 강화	지능화된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 방어력 확보

※ 출처: 디지털도시국 정보시스템과 제공

□ 향후 계획

○ 정보시스템별 상시 장애예방 · 대응체계 현황 조사 및 정비 실시

- 전 시스템 연계서비스 대체수단 확보, 복수인증 적용, 모의훈련 강화 등

○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 수립**

- 핵심 정보시스템 원격 이중화 구축 등 무중단 서비스 실현
- 데이터센터 백업 인프라 보강 및 장애예측 모니터링 강화로 장애 복원력 제고
- AI 보안관제 고도화 등 지능화된 위협 대비 사이버 방어력 확보 등